2024년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4. 2. 15.(목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최진원, 하병현, 한승원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3건(안건번호 제2024-1554호~181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554호(순번 1번)는 종교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물에 영상저작물의 캡처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게시하였으나 저작재산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시장 및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복제·전송자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4-1555호(순번 2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4-1556호~1816호(순번 3번~263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19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4-1108호~130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19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변호사: 제2024-7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

시함.

- 박현주 변호사: 위원님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수정 의견 및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고,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변호사: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박현주 변호사: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

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771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이번 심의의 경우 긴급 심의 안건이 있어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안건 외에 추가된 목록이 있음.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종교 커뮤니티인 '◆◆◆◆◆◆◆◆◆◆'에서 국내 방영 중인 방송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를 무단 이용 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이 기재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의 직원 즉 권리자로 추정되며, 총 1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 ♣♣ - ♣♣♣'라는 제목으로 2012. 12. 8. 방영된 ◉◉◉ 방송프로그램 '▣▣▣ ▣▣ ▣▣' 중 '◈◈◈◈ ◈◈◈◈ -◈◈◈◈◈◈◈◈-'편의 일부 방송 장면 캡쳐와 내용을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방송저작물인 원저작물의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으로서, 전체 저작물에 비하면 인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많지 않은 점, 심의 대상 게시물이 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서의 가치를 대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심의 대상 게시물의 영리적 성격이 불분명한 점,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혹은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가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저작권법 제103조 또는 민·형사적 조치를 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종교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물에 영상저작물의 캡처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게시하였으나 저작재산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시장 및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복제·전송자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부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 ♣♣'의 자막파일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의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는 ♤♤♤ 블로그에서 직접 번역하여 자막을 제작 전송하고 있고, 한편 원저작물은 국내 방영 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이며 합법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비록 게시자가 직접 번역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변호사: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번~26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76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26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애니메이션 '약사의 혼잣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1번은 웹하드에서 애니메이션 '약사의 혼잣말' 1화~17화 분량을 1,16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0. 22.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임.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1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화~12화 분량을 6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3.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드라마 '선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1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선산' 1화~6화 분량을 23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9.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영화 '♠♠♠ ♠'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9번은 보호원이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하여 신속심의를 요청한 저작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음. 현재 영화관에서 방영되고 있는 작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김원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3번~263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3번~26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263번은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4-1554호(순번 1번)는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1555호(순번 2번)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1556호~1816호(순번 3번~26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현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1108호~1301호(순번 1번~194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29.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